

의안번호	2209715
의 퇴 인	김상훈 의원
회 답 일	2025.04.22.
추계번호	25C2215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(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)	(제2항)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(이하 “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.	재량규정
2	안 제47조(정년)	(제2항)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, 3명인 경우 2년,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(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7조(정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자녀의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, 승진임용 및 정년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
- 개정안이 시행되어 승진임용 및 정년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무원의 재직 중 인건비와 퇴직 후 공무원연금 급여가 상승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기초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
 - 추가재정소요 산출을 위해서는 자녀 수에 따른 공무원의 연령, 직급, 재직 기간 및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, 현재 관련 자료가 관리되고 있지 않음

- 참고로, 2023년 실시된 「공무원 총조사 보고서」¹⁾에 따르면, 조사에 응답한 교육공무원 22만 9,615명의 평균 자녀 수는 1.83명으로 나타남
 - 공무원총조사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8조²⁾ 등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시행되며, 가장 최근에 수행된 공무원 총조사는 2023년에 이루어짐

[표 1] 교육공무원의 자녀 수

(단위: 명)

구 분	응답인원	평균 자녀수	전체 자녀수	자녀 수별 공무원수					
				소계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합계	229,615	1.83	273,999	149,841	40,786	94,985	13,166	789	115
총장	19	1.95	37	19	3	14	2	—	—
교수	5,209	1.91	9,008	4,713	1,024	3,142	496	43	8
부교수	1,652	1.67	2,201	1,315	528	691	94	1	1
조교수	1,958	1.56	1,821	1,169	594	502	69	4	—
조교	2,340	1.73	1,670	966	354	528	76	8	—
교장/원장	7,501	2.02	14,376	7,125	797	5,470	802	49	7
교감/원감	8,977	1.99	16,770	8,434	1,168	6,272	934	47	13
수석교사	617	1.95	1,122	575	96	417	56	6	—
교사	201,196	1.81	226,795	125,416	36,192	77,881	10,626	631	86
교육전문직	146	1.83	199	109	30	68	11	—	—

주: 공무원 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해당 자료는 공무원 전체의 자녀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
자료: 인사혁신처, 2023년 제12차 「공무원 총조사 보고서」 (2024.4.), 336p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1) 2023년 8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정무직 공무원, 국가정보원 직원, 대통령경호처 직원,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

2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18조(통계 보고) ① 국회의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